

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6] <개정 2014.11.4.>

기록관리학 교육과정(제42조 관련)

1. 이수학점 및 수료의 기준

가. 이수학점 기준: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(실습을 포함한다)를 1학점으로 하며,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할 것

나. 수료 기준: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최소 학점(24학점) 이상을 이수하고,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할 것

2. 교육 기간 및 방법 기준

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,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할 것

3. 교육과목 개설 기준

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다음의 영역별 교육과목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하되,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개설한 과정으로 할 것

구 분	교과 내용
기초영역	정부조직 및 행정론, 기록관리학개론, 기록관리 관련 법령
전문영역	기록평가·선별론, 기록조직론, 기록보존론, 기록정보서비스론, 전자기록관리론, 기록시스템론, 업무분석론, 민간기록관리론
기타	기록관리 실습, 논문지도

4. 교수요원 기준

가.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
- 2)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·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나.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으로 배치할 것